

都市計劃施設(廢棄物處理施設) 決定(案)에 대한 意見 聽取案

의안 번호	51
----------	----

제출년월일 : 2003. 3. 1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파쇄·선별등의 중간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건설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환경을 개선코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신청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골자

- 시 설 명 : 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
- 위 차 : 장림동 914-8번지 일원
- 면 적 : A=9,741m'
- 용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신 청 자 : (주)부영개발 김동진

3.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都市計劃施設(廢棄物處理施設:一般廢棄物) 決定(案)】

1. 都市計劃施設 概要

- 시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
- 위치 : 장림동 914-8번지 일원
- 면적 : A=9,741m'
- 용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신청자 : (주)부영개발 김동진

2. 決定事由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파쇄·선별등의 중간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건설 폐기물의 무단투기로 인한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코자함.

3. 都市計劃施設 決定調書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 폐기물	장림동 914-8번지 일원	.	9,741	9,741	.	건폐율:60%이하 용적율:300%이하

4. 現 況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신청지는 보덕포 동남측 약160m 지점에 위치하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으로 부지경사도는 약36~41% 정도이며,
- 진입도로로 계획된 중로3-137호선은 현재 (주)신일환경에서 신청지까지 개설중(L=87m B=15m)으로 2003. 6. 30일 준공예정임.
- 신청지에 편입된 토지현황은 아래와 같음.

지 번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장림동 914-6	10,470	6,741	(주)부영개발,한국자원(주)	공유자 동의득함
장림동 914-8	2,553	2,553	(주)부영개발	
장림동 914-33	599	8	(주)부영개발	
장림동 914-34	1,420	150	(주)신일환경	동의 미득함
장림동 914-37	671	269	(주)부영개발,한국자원(주)	공유자 동의득함
계	15,713	9,741		

5. 關聯部暑 및 措置計劃

관련 부서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부 산 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부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제척함이 타당할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등 관련 법에 적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녹지지역은 대상 부지에서 제외하였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조치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내 하수도 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하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관거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하고,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하수처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시설과 접한 기정 도시계획도로(중2-137호선)와의 종단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도로 및 계획도로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인가시 조치 ○ 실시계획인가시 조치

관련 부서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p>○당해 시설이 입지시에는 대형차량 진·출입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대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동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전 문화재지표 대상사업은 아니나</p> <p>○공사중 유구 또는 유물이 발견되면 문화재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도난 및 훼손방지를 조치를 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p>	<p>—</p> <p>○ 실시계획인가시 조치</p>
부 산 광역시	<p>○동 시설의 신청부지는 도시계획상 전용공업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시설결정시 자연녹지지역은 녹지훼손, 질·성토로 인한 지형의 변화 등으로 동·식물상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므로 가능한 보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 시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영향요소에 대해 저감방안을 마련,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의거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p> <p>○대기·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28조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설치 사전(변경)신고 등 의무사항 준수</p> <p>▷사업장 진·출입구에는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출입차량의 바퀴 및 차체에 묻은 토사를 제거 후 통행</p> <p>▷공사중 사업장 출입차량의 먼지발생을 위한 가포장 설치</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를 수행하고, 동 시설의 가동에 따른 오염물질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파쇄 시설의 실내시공이 확행되어야 함</p>	<p>○자연녹지지역은 대상부지에서 제외하였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시 조치</p> <p>○ 실시계획인가시 조치</p> <p>▷시설운영시 조치 사항은 환경청소과에 통보</p>
	<p>○폐사야적장 등에서 강우시 토사석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를 설치하여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p> <p>○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일 경우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함</p> <p>-가능한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의 사용</p> <p>-건물주변에 나무식재를 최대한하는 등 친환경적인 사업장 조성계획 수립</p>	<p>○ 실시계획인가시 조치</p> <p>○ 실시계획인가시 조치</p>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p>○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내 하수도 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하수도법, 하수도시설 기준, 하수관거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함</p> <p>○실시계획승인 신청시 하수처리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함</p>	<p>○ 실시계획인가시 조치</p> <p>○ 실시계획인가시 조치</p>
부산광역시	<p>○자연녹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가능한 폐기물처리 시설부지에서 제외하여 검토함이 좋겠음</p> <p>○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의 산림이 편입되어 있어, 자연 및 주변경관을 위해 산림지역은 편입부지에서 제척하거나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p>	<p>○자연녹지지역은 대상부지에서 제외하였음</p>
	<p>○협의시설과 접한 지정 도시계획도로(중2-137호선) 개설시 종단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고</p> <p>○당해 시설이 입지시에는 대형차량 진출입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해 주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대안 마련이 검토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됨</p>	<p>○ 실시계획인가시 조치</p> <p>○ 실시계획인가시 조치</p>
	<p>○도시계획상 일부전용공업지역,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입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이행이 되어야 하며</p> <p>○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규정 등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함</p>	<p>○관련법령에 적합토록 조치하겠음.</p>

관련 부서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낙동강 유역 환경청	○사업시행에 따라 수목의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식생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수고가 높고 식생이 양호한 수목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사업장 경계주변으로 최대한 이식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로 대형목을 열식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시 조치
	○부지조성사업시 발생하는 절·성토부분에 대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암반층의 결이 사업부지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경우 사면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 사면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시 조치
	○절개지 녹화를 PEC4 공법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시공 후 주변경관과 부조화가 예상되므로 보다 환경친화적인 사면녹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시 조치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업지역 주변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 가설 방음판넬 설치, 야간공사 지양 등 소음·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시 조치
	○폐기물처리시설(분쇄기 등)이 가동될 경우 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환경 위해가 예상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은 상육시설이 설치된 공장 등 내부에 설치하여야 함 ○사업지역 주변의 비산먼지 등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비산먼지 발생지역 살수, 세륜시설 설치운영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6)' 준수	○ 실시계획 인가시 조치 ▷시설운영시 조치사항은 환경청 소과에 통보 ○ 실시계획 인가시 조치 ▷시설운영시 조치사항은 환경청 소과에 통보
○사업시행시 본 협의 내용 및 환경성검토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정적으로 주변지역의 환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본 협의의견 및 환경성검토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에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환경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실시계획 인가시 조치 ▷시설운영시 조치사항은 환경청 소과에 통보	

관련 부서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환경 청소과	<p>○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환경 67510-3761 (2001. 10. 29)호로 적정 통보하였으며, 그러나 현 도시계획결정신청사항과 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이 상이함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신고(변경)을 하여야 하며 방치폐기물은 처리하였으며,</p> <p>○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변경결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환경기준 유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전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며,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행정계획의 확정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장에게 미리 협의 요청하여야함</p>	<p>○ 실시계획 인가신청전 변경신고토록 신청인에게 통보</p> <p>○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과 사 전 협 의 하 였 음.</p>
	<p>○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이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는 의제처리 됨</p> <p>-장비중 크랏샤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중 분쇄시설에 해당되며, 동 시설의 동력이 20마력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다만 대기환경보전법상 분쇄시설중 습식을 제외하며, "습식"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조분쇄기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원료속에 수분이 수분이 항상 15%이상 함유되어 경우를 말함]</p> <p>-선별 및 분쇄과정에서 습식공정의 물을 재이용 또는 방류하고자 할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1일 최대폐수 배출량이 0.1m³이상일때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여야 함</p> <p>※ 용융, 혼합공정이 있을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p> <p>○대기환경규제법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의 규정에 의거 토목건설·정지공사의 면적이 1,000m²이상이므로 당해 사업 시행일 3일전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골재 보관면적이 100m² 이상일 경우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함</p>	<p>○도시계획 시설 결정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토록 신청인에게 통보</p> <p>○ 실시계획 인가시 조치</p>

관련 부서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지역 경제과	<p>○산림법상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산림형질 변경은 가능하나 사업계획부지 주변이 공장지대임을 감안하여 자연녹지지역의 산림은 최대한 보존(산림훼손 최소화)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p> <p>○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시 산림전용에 따른 대체조립비는 부과대상이며, 생육하고 있는 임목의 이식, 벌채 여부 등은 임목축적조사서(수목물량표)를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대체조립비 : 산림형질변경면적㎡×1,270원. 끝.</p>	<p>○자연녹지지역은 대상부지에서 제외하였음</p> <p>○ 실시계획인가사 조치</p>
교통 행정과	<p>○사업시행시 본 시설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하여 부산지방경찰청과 적정교통체계 협의등 교통안전대책 수립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정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함</p>	<p>○ 실시계획인가사 조치</p>
건설과	<p>○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요자하는 부지와 접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중로2-137호선)는 금후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종·횡단을 검토하여 용벽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며,</p> <p>○ 사업부지 인접 도시계획도로 부분(L=36m, B=15m)은 도로개설 후 우리구에 무상귀속토록 하였으면 좋겠음.</p>	<p>○ 실시계획인가사 조치</p> <p>○ 산청인하 협의결과 도로개설과 무상귀속은 어려운 것으로 협의되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p>
허가 민원과	<p>○장림동 914-8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전용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걸쳐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규정과 관련 [별표 12]호에 의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4층 이하)은 가능하며</p> <p>○건폐율 및 용적율이 6.9%로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지역안의 건폐율) 및 동 조례 제45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규정에 적합함</p>	

관련부서	협 의 의 건	조치계획
지 적 과	○의견없음	-
장림1동장	○해지역은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가 집결되어 있고 중구청 재활용 선별장 등 유사업체가 산재하여 있으며 인근지역에서 악취와 매연 등으로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형차량의 진입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지역임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시 조치

6. 檢討意見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신청 대상지중 미동의토지(장림동 914-34번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나 신청자의 구체적인 토지 매입계획을 제출받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코자하며,
- 진입도로로 계획된 중로3-137호선은 현재 (주)신일환경에서 신청지까지 개설중(L=87m B=15m)으로 시행자인 (주)신일환경으로부터 진입도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으며,
- 사업부지 인접 도시계획도로 부분(L=36m, B=15m)은 도로개설 후 무상 귀속토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건설과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협의결과 경제적인 사정으로 도로개설 및 무상귀속이 어려운 것으로 회신되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것이 가할것으로 사료됨.

7. 措置意見

-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 결정 신청건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113조에 의거 주민 및 의견 청취 후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함. 끝.